



제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중보건의 등 보충역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허용〉
■ 안규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092호)

2025. 2.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류 승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1. 공중보건 의사, 공익법무관 등 보충역 복무자 보수 현황	6
2. 초급간부 처우개선 확대 관련 현황	7
3. 공중보건 의사 등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시 소요 예산 추계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안규백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4. 12. 2.
3. 회부연월일 : 2024. 12.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의무복무를 마친 후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적응하기 위한 자산을 형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역병, 상근예비역 등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으로 국가는 가입자가 입금한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재정지원의 대상이 보충역 중에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공중보건 의사, 공익법무관 등 다른 보충역의 경우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하게 의무복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 대상을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을 제외한 보충역 전체로 확대하여 보충역 복무자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병역의무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9조의2제1항).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대상에 보충역인 공중보건 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 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중 2025년 1월 1일 이후 입영하거나 소집·편입되는 사람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2제1항).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9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① 국가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u>사회복무요원</u> , 대체복무요원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79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① --- ----- <u>보충역</u> (제5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을 제외한 사람에 한한다)-----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장병내일준비적금은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이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적금에 가입하여 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가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전역 후 일정 규모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임.¹⁾

1) 「병역법」 제79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① 국가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연도별 재정지원 현황>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예정)
적금 납입한도액	40만원	40만원	40만원	55만원
매칭비율	(원리금의) 33%	(원리금의) 71%	(원금의) 100%	(원금의) 100%
월 최대 지원금액	14.1만원	30만원	40만원	55만원

* 자료 : 병무청

- 장병내일준비적금 제도는 2018년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을 대상²⁾으로 최초 시행되었으며, 제도 시행 기간동안 꾸준히 제도 수혜 대상 추가³⁾, 정부 재정지원 범위를 확대해온 결과 현역병 가입율이 99%에 달하는 등 제도 효과성은 검증된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대상에 보충역인 공중보건 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 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이하 “공중보건 의사등”이라 한다) 중 2025년 1월 1일 이후 입영하거나 소집·편입되는 사람을 포함하여 정부가 현역병과 동일한 재정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에서 군 복무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동일한 보충역으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과의 재정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임.

2)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대상 :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경찰, 소방, 해양경찰),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3) 2021. 4월 대체복무요원까지 지원 대상 확대

□ 다만, 현재 유사한 영역에서 복무하고 있는 장교인 군의관, 군법무관, 수의장교 등이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대상자가 아님을 고려할 때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대상자로 공중보건의사등을 포함하여 가입 대상을 확대할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보임.

-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안규백의원 대표발의로 군인에 대한 재정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06034호, 2024.12.2.)이 발의되어 국방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또한, 국방위원회 법률안소위원회(2024.11.26.)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대상을 초임간부(장교, 부사관)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03441호, 황희의원 대표발의)이 상정되어 논의 되었으나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범위, 지원금 지원 방식 등에 있어 법률안소위원회 위원 및 관계 정부 부처 간 의견 차이로 계속 논의 하기로 한 바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국방위원회 법률안소위원회(2024.11.26.) 주요 논의 사항>

발언자	주요 발언 내용
한기호 위원	재정지원 방식을 사안별로 별도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현재 시행중인 단기복무장려금 등과 통합하여 시행할 필요
박선원 위원	최근 초임간부에 대한 수당 인상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
국방부차관	초임간부에 대해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허용 찬성
병무청장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포함 필요
기획재정부심의관	단기복무장려금 등 현재 시행되는 제도를 함께 고려하여 심층적인 제도 설계 방안 검토 필요

□ 따라서 현재 시행 중인 병역의무자에 대한 재정 지원 정책과 함께 국방위원회 법률안소위원회에 계류중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03441호), 국방위원회에 회부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제2206034호) 및 동 개정안 개정 사항을 종합하여 장병내일 준비적금 가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의무자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방안을 입법 정책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방부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장려수당, 장려금 등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재정지원 방안 검토가 필요하고, 재정 지원 범위 등에 대한 관계 부처 간의 의견 차이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의견 조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기획재정부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장려수당, 장려금 중 어떠한 제도가 나올지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점,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범위와 관련하여 정부 기관 간 이견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07

※ <참고자료1>

□ 공중보건 의사, 공익법무관 등 보충역 복무자 보수 현황

- 공중보건 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 의사 보수 기준

(농어촌 의료법 시행령 별표, 병역판정검사전담 의사 운영규정 별표)

보수	공중보건의사의 구분	근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봉급	전문의 수련경력이 없는 사람	중위 1호봉	중위 2호봉	중위 3호봉
	인턴 수련 1년 이수자	중위 1호봉	중위 2호봉	대위 1호봉
	레지던트 수련 1년 이수자	중위 2호봉	대위 1호봉	대위 2호봉
	레지던트 수련 2년 이수자	대위 1호봉	대위 2호봉	대위 3호봉
	레지던트 수련 3년 이수자	대위 2호봉	대위 3호봉	대위 4호봉
	레지던트 수련 4년 이수자	대위 3호봉	대위 4호봉	대위 5호봉
가족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진료수당	예산의 범위에서 월 2만원 이하 지급			

* 업무(검진)활동장려금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900,000원 지급(공중보건의사, 전담의 운영지침)

- 공익법무관 보수 기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보수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중위 1호봉	중위 2호봉	중위 3호봉	중위 4호봉	중위 5호봉	중위 6호봉	중위 7호봉
공익법무관수당	월봉급액의 8퍼센트							
정근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명절휴가비								

* 법무활동장려금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50,000원 지급(공익법무관 관리지침)

- 공중방역수의사 보수 기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보수 구분	근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봉급	중위 1호봉	중위 2호봉	중위 3호봉
가족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가축방역수당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만원 이하 지급		

* 방역활동장려금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600,000원 지급(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

※ <참고자료2>

□ 초급간부 처우개선 확대 관련 현황

지 원 내 용		2022년	2023년	2024년
예 산		1,872억원	2,555억원	4,276억원
○ 단기복무장려금	장교	600만원	900만원	1,200만원
	부사관	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
○ 학군사관후보생 학업생활지원금		-	8만원×8개월	18만원×10개월
○ 간부활동비	소대장	6만원/월	12만원/월	
	주임원사	20만원/월	30만원/월	
○ 시간외수당 (GP·GOP 등 격오지 근무자)		57시간	57시간	100시간
○ 당직비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
○ 주택수당		월 8만원 (3년이상 간부)	월 16만원 (3년이상 간부)	월 16만원 (+3년미만 간부)

· 자료 : 기획재정부

※ <참고자료3>

□ 공중보건 의사 등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시 소요 예산 추계

○ 소요 예산 : 연간 146억원

○ 산출내역 : 인원(1,200명) × 기간(24개월) × 월 납입액(55만원) × 가입률(92%)

△ 가입인원(1,200명) : 최근 3년간 공중보건 의사 등 평균 편입인원

△ 가입기간(24개월) : 조세특례제한법 상 최대 비과세기간

△ 월 납입액(55만원) : 장병내일준비적금 최대납입금액('25년 기준)

△ 가입률(92%) : 사회복지무요원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률('24. 12월 기준)

<최근 3년간 공중보건 의사 등 편입인원>

(단위 : 명)

구 분	계	공중 보건 의사	병역판정검사 전담 의사	공익 법무관	공중방역 수의사
2024년	941	716	54	68	103
2023년	1,356	1,114	52	63	127
2022년	1,292	1,050	52	40	150

* 평균 편입인원 : 1,200명('24년부터 공보의 등 편입인원 감소 추세)